

대구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200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형곤, 최기주

피고1. E

2. F

3.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이선아, 어수용, 김한설

변론 종결2021. 3. 4.

판결 선고2021. 3. 25.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59,455,695/1,299,688,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 2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F은 ①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4,401,157/901,937,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 25.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각 1,566,436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G는 ①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4,435,746/1,817,853,177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 23.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각 18,728,992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 및 다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1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8. 5. 2. 접수 제11103호로 마친,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1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8. 5. 2. 접수 제11106호로 마친,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1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8. 5. 2. 접수 제1110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F은 각 4,705,882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56,840,468/1,197,376,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0,171,763/1,004,249,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98,308,239/1,807,327,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F은 각 2,316,103원을, 피고 G는 각 19,037,995원1)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F(1녀), G(외아들) 및 소외 I(2녀), 원고 A(3녀), B(4녀), C(5녀), D(6녀)의 1남 6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2018. 5. 9. 각 2018.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1 내지 4 부동산은 피고 E 명의로, 제5 내지 7 부동산은 피고 F 명의로, 제8 내지 11 부동산은 피고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8. 5. 2. 칠곡동명우체국에서 망인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 3계좌를 해약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F은 2018. 5. 4. J조합에 위 자기앞수표 4장을 지급제시한 뒤 그녀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2018. 11. 11. 사망하였는데, 당시 제12, 13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칠곡동명우체국, J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8. 5. 2. 당시 알츠하이머 등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 E에게 제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 F에게 제5 내지 7 부동산 및 4,000만 원을, 피고 G에게 제8 내지 11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1 내지 11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위 4,000만 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8. 2. 2. 간이정신상태 검사(K-MMSE & GDS)에서 9점을, 2018. 8. 2. 6점을 받은 사실, 망인에 대한 K요양병원 간호기록부에 "2018. 5. 1. 15:30 횡설수설하여 의미가 전달되지 않음, 2018. 5. 3. 17:00 치매로 인한 인지저하로 인식기술 다소 손상보이며 엉뚱하여 간병인의 조언과 감독 필요함" 등의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M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칠곡동명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5. 2. 무렵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M협회 의료감정원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2018. 2. 2. 및 2018. 8. 2.에 시행된 망인에 대한 간이정신상태 검사결과 수치는 당시 망인의 치매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망인은 2018. 5. 2.경 경도 치매의 후기 단계 또는 중등도 치매의 전기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망인의 치매 단계 및 망인이 법률행위 또는 거래행위가 가지는 일상의 통상적 의미에 대한 이해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망인의 정신능력이 법률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② 칠곡동명우체국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2018. 5. 2. 칠곡동명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3건의 정기예금에 대한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통장과 신분증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청하였다. 망인이 내방 시 스스로 걸어 다니며 본인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였고, 인지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③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K요양병원에서 망인의 간병을 담당한 요양보호사 L는 이 법원에서 "2018. 2.경 입원한 후 1달 정도 지나면서 망인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좋아졌다. 2018.

4.경에서 6.경에는 나가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마음대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망인의 2녀 I은 "망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피고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고, K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만약 망인이 2018. 5. 2.경 피고들에게 제1 내지 11 부동산 및 4,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 유효하다면,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 등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환산기준은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함이 타당하다.

2) 적극적 상속재산 망인이 2018. 11. 11. 사망할 당시 제12, 13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제12, 13 부동산의 2018. 11. 11. 당시 시가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688,504,000원이다.

1	제12 부동산	437,932,000원
2	제13 부동산	250,572,000원
합계	688,504,000원	

3) 증여액 가) 부동산

(1) 망인이 2018. 5. 2. 피고 E에게 제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 F에게 제5 내지 7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제8 내지 11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제1 내지 4 부동산의 2018. 11. 11. 당시 시가 합계는 1,299,688,000원이고, 제5 내지 7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844,037,000원이며, 제8 내지 11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1,457,327,000원이다.

1	제1 부동산	피고 E	758,580,000원
2	제2 부동산	140,180,000원	
3	제3 부동산	298,616,000원	
4	제4 부동산	102,312,000원	
소계	1,299,688,000원		

1	제1 부동산	피고 E	758,580,000원
5	제5 부동산	피고 F	498,575,000원
6	제6 부동산	340,380,000원	
7	제7 부동산	5,082,000원	
소계	844,037,000원		
8	제8 부동산	피고 G	601,848,000원
9	제9 부동산	402,523,000원	
10	제10 부동산	288,156,000원	
11	제11 부동산	164,800,000원	
소계	1,457,327,000원		

(2)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이 담보하던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만을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F이 2018. 5. 2. 망인으로부터 제5 내지 7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제6 부동산에는 채무자가 망인이고 근저당권자가 J조합인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F은 2018. 6. 5.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을 인수하면서 제5 내지 7부동산을 위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F이 인수한 채무액 3억 원은 피고 F이 증여받은 제5 내지 7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피고 F에게 증여한 제5 내지 7 부동산의 가액은 544,037,000원(= 844,037,000원 ~ 3억 원)이 되고,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제1 내지 11 부동산의 총 가액은 3,301,052,000원(= 1,299,688,000원 + 544,037,000원 + 1,457,327,000원)이 된다.

나) 금전

(1) 망인이 ① 피고 F에게 2018. 5. 2.경 4,000만 원, 2018. 5. 8. 1,500만 원, 2018. 6. 15. 290만 원, 합계 5,790만 원을, ② 피고 G에게 2015. 8. 31. 5,000만 원, 2016. 10. 7. 3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조합관음지점, P조합, 대구용산동우체국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① 피고 F은 상속개시년도인 2018년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는 명목 가치와 같은 5,790만 원이고, ② 피고 G가 증여받은 3억 5,000만 원의 상속개시 당시(2018년)의 화폐가치를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360,526,177원(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결국 망인이 피고 F, G에게 증여한 금전의 합계는 418,426,177원(= 5,790만 원 + 360,526,177원)이 된다.

피고 F	2018. 5. 2.	40,000,000원	1	40,000,000원
2018. 5. 8.	15,000,000원	15,000,000원		
2018. 6. 16.	2,900,000원	2,900,000원		
소계	57,900,000원			
피고 G	2015. 8. 31.	50,000,000원	104.756/100	52,378,000원
2016. 10. 7.	300,000,000원	104.756/101.986	308,148,177원	
소계		360,526,177원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제1 내지 11 부동산 및 금전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피고 F, G가 망인의 배우자 피고 E의 노후 생활을 돕고 망인의 제사를 지내달라는 부담부 증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전부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전부가 제외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절반은 피고 E의 고유재산이므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1118조가 위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 어떠한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 있는 것 역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증여받은 제1 내지 11 부동산 및 금전은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민법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하는 점 등 배우자의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서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② 피고 E는 망인과 1968. 2. 10. 결혼하였고, 그 이후인 1974. 12.경 경북 칠곡군 Q 답 3,848m²을 매수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망인 사망 후인 2019. 2.경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7억 원에 매도하였다.

③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산정하더라도, 피고 E는 위 7억 원을 제외하고도 11억 8,000만 원의 재산²⁾을 망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만약 망인이 피고들에게 제1 내지 11 부동산 및 금전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 E가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법정상속액인 약 7억 8,000만 원³⁾보다 4억 원 정도가 더 많다.

④ 망인은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에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시기와 증여 목적물, 증여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가 상속재산의 분배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망인의 피고 F, G에 대한 증여가 피고 E의 노후 생활을 돕고 망인의 제사를 지내달라는 의미의 부담부 증여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은, 피고 F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5,790만 원을 망인 또는 피고 E의 생활비, 요양비, 병원비, 주거수리비, 세금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 전액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F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5,790만 원을 망인 또는 피고 E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F이 5,790만 원 중 피고 E를 위해 사용한 부분은 피고 F과 피고 E 사이에 개인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문제이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 F이 5,790만 원 중 망인을 위해 사용한 부분도 피고 F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피고 F이 2018. 6. 5. 인수한 망인의 채무 3억 원이 피고 G가 2016. 10. 7. 증여받은 3억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은 피고 G가 아니라 피고 F이고, 피고 F이 인수한 채무가 피고 F이 증여받은 제6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며, 피고 F이 채무를 인수한 시기도 피고 G가 망인으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은 2016. 10. 7.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때이므로, 위 3억 원의 채무는 피고 F이 증여받은 제5 내지 7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액의 합계는 3,719,478,177원(= 부동산 증여액 3,301,052,000원 + 금전 증여액 418,426,177원)이다.

4) 소결론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4,407,982,177원(= 적극적 상속재산 688,504,000원 + 증여액 3,719,478,177원)이다.

라.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E의 법정상속분은 3/17이고,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의 법정상속분은 2/17이며,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그러므로 피고 E의 유류분액은 388,939,603원(= 4,407,982,177원 × 3/17 × 1/2)이고, 원고들 및 피고 F, G의 유류분액은 각 259,293,069원(= 4,407,982,177원 × 2/17 × 1/2)이다.

마. 특별수익액(C)

망인으로부터 피고 E가 시가 합계 1,299,688,000원인 제1 내지 3부동산을, 피고 F이 시가 합계 544,037,000원인 제5 내지 7부동산 및 금전 57,900,000원을, 피고 G가 시가 합계 1,457,327,000원인 제8 내지 11 부동산 및 금전 360,526,177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 E의 특별수익액은 1,299,688,000원이고, 피고 F의 특별수익액은 601,937,000원(= 544,037,000원 + 57,900,000원)이며, 피고 G의 특별수익액은 1,817,853,177원(= 1,457,327,000원 + 360,526,177원)이다.

바. 순상속분액(D)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688,504,000원이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E의 법정 상속분은 3/17이며,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G의 법정상속분은 2/17이므로, 피고 E의 순상속분액은 121,500,705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688,504,000원 × 법정상속분 3/17)이고, 원고들, 피고 F, G의 순상속분액은 각 81,000,470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688,504,000원 × 법정상속분

2/17)이다.

사. 유류분 부족액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표(금액 단위: 원)와 같다.

원고들	4,407,982,177	259,293,069	0	81,004,470	각 178,292,599
피고 E	4,407,982,177	388,939,603	1,299,688,000	121,500,705	-1,032,249,102
피고 F	4,407,982,177	259,293,069	601,937,000	81,000,470	-423,644,401
피고 G	4,407,982,177	259,293,069	1,817,853,177	81,000,470	-1,639,560,578

아.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1) 유류분 반환 비율 및 유류분 반환액의 산정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및 반환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E	1,032,249,102	1,032,249,102/3,095,454,081	각 59,455,6957) = 178,292,599원 × 1,032,249,102/3,095,454,081
피고 F	423,644,401	423,644,401/3,095,454,081	각 24,401,1578) = 178,292,599원 × 423,644,401/3,095,454,081
피고 G	1,639,560,578	1,639,560,578/3,095,454,081	각 94,435,7469) = 178,292,599원 × 1,639,560,578/3,095,454,081
합계	3,095,454,081		각 178,292,598

2) 유류분 반환 방법 및 범위 피고들이 원고들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각 특별수익재산 중 제1 내지 11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을, 망인의 피고 F, G에 대한 증여액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각 특별수익재산의 범위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액을 피고들의 각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특별수익재산별 반환지분 및 반환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제1부동산	피고 E	758,580,000	59,455,695/ 1,299,688,000	34,702,099	원물반환
제2부동산	140,180,000	6,412,692			
제3부동산	298,616,000	13,660,526			
제4부동산	102,312,000	4,680,378			
소계	1,299,688,000		59,455,695		
제5부동산	피고 F	498,575,000	24,401,157/ 901,937,000(11) 피고 F의 특별수익액은 피고 F이 망인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601,937,000원(910,937,000원 ~ 3억원)이지만 이 부분은 피고 F의 반환액 24,401,157원을 산정할 때 고려되었으므로, 부동산 반환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3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901,937,000원을 분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3,488,533	원물반환
제6부동산	340,380,000	9,208,698			
제7부동산	5,082,000	137,489			
현금증여	57,900,000	1,566,436	1,566,436	가액반환	
소계	901,937,000		24,401,157		
제8부동산	피고 G	601,848,000	94,435,746/ 1,817,853,177	31,265,432	원물반환
제9부동산	402,523,000	20,910,688			
제10부동산	288,156,000	14,969,431			
제11부동산	164,800,000	8,561,203			
현금증여	360,526,177	18,728,992	18,728,992	가액반환	
소계	1,817,853,177		94,435,746		

자.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① 피고 E는 제1 내지 4 부동산 중 각 59,455,695/1,299,688,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1. 2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F은 제5 내지 7

부동산 중 각 24,401,157/901,937,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1. 25.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G는 제8 내지 11 부동산 중 각 94,435,746/1,817,853,177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1. 23.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④ 피고 F은 각 1,566,4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⑤ 피고 G는 각 18,728,9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²⁾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훈

판사황윤철

판사남명수

별지

1) 원고들의 2021.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들이 피고 G에게 각 19,037,995원을 구하는 부분이 예비적 청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날 제출된 원고들의 준비서면에는 이 부분 청구가 예비적 청구인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원고들의 2021. 2. 24.자 준비서면 7면), 이 부분 청구는 유류분 반환청구이므로 논리적으로도 예비적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추후에 상속재산분할사건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피고 E는 약 1,183,365,925원[= 1,299,688,000원(특별수익액) + 121,500,705(순상속분액) - {59,455,695 × 4}(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액)]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777,879,207원[= 4,407,982,177원(유류분산정 기초재산) × 3/17(법정상속분)]

4) 위 사.항에서 계산된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음수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은

금액은 같으나 양수로 표시된다.

5) 피고별 유류분 초과액/피고들의 유류분 초과액 합계

6)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 피고별 유류분 반환비율

7) = 178,292,599원 × 1,032,249,102/3,095,454,081

8) = 178,292,599원 × 423,644,401/3,095,454,081

9) = 178,292,599원 × 1,639,560,578/3,095,454,081

10) 피고별 유류분 반환액/피고별 특별수익재산 가액 합계

11) 피고 F의 특별수익액은 피고 F이 망인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하였으므로

601,937,000원(910,937,000원 ~ 3억원)이지만 이 부분은 피고 F의 반환액 24,401,157원을

산정할 때 고려되었으므로, 부동산 반환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3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901,937,000원을 분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원고들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